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95호

환경부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청”을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료”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전자적 저장매체”란 컴퓨터 파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등 보호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6.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7.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의 제목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등”을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청자)”를 “(요청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요청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서”를 “요청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자”를 “요청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보호신청”을 “자료보호요청”으로, “신청할”을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자료보호의 요청은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변경등록 등의 경우 자료보호의 요청) ① 최초 등록·신고 시 자료보호 요청이 수리된 식별정보의 보호기간은 제11조에 따른다.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을 생략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 시 새로 제출하는 자료의 자료보호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보호기간은 수리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한다. 최초 등록·신고 시 자료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자가 새로 제출하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 중 “별표와” 를 “별표1과”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신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을 “(요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료보호신청서” 를 “자료보호요청서”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요지” 를 각각 “요청요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신청인” 을 “요청인” 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보호신청하는” 을 “보호요청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시에는 별표2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자에게 영업비밀 요건에 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자료보호 신청방법 등” 을 “자료보호 요청방법 등”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청자” 를 “요청자” 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신청서” 를 각각 “요청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자” 를 “요청자” 로, “신청서” 를 “요청서” 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신청자” 를 “요청자” 로, “신청할” 을 “요청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자” 를 “요청자” 로, “자료보호연장신청을” 을 “자료보호연장요청을” 로, “자료보호연장신청서” 를 “자료보호연장요청서”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은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수리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 대상 등의 확대 시 자료보호 요청의 특례) ①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또는 범위가 법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보호기관의 장은 확대된 정보공개 규정의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른 자료 중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안내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보호 요청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대상 또는 범위의 확대 내용
2.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및 방법
3. 자료보호 요청서 제출 기한

②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자료보호기간 기산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자료: 등록면제확인 통지일
2.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자료: 변경등록 통지일 또는 변경신고 통지일

3.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화학물질의 자료: 등록통지일 또는 신고통지일
4.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 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 해당 추가자료 제출일
5. 법 제2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 해당 추가자료 제출일
6.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자료: 신고증 발급일

제12조제1항 중 “통지를 함” 을 “통지함”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신청자” 를 “요청자” 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자적 자료관리)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로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자료는 보호기관의 내부망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65조에 따른 방법으로만 저장·보관할 것
2. 보호자료에 대하여 기술적 보안조치를 할 것
3. 보호자료가 저장된 보조저장매체는 일반용 저장매체와 구분하여 관리할 것
- ②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가 저장된 전자적 저장매체를 폐기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보호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보호 수리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적 저장매체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을 준용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호사고” 를 “자료유출사고” 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청인” 을 “요청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자” 를 “요청자” 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보호사고의 신고 등)” 을 “(자료유출사고의 통보 및 조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누구든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보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일시 및 장소(온라인 유출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
 2. 사고의 내용 및 경위
 3.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
 4. 그 밖에 사고 수습에 필요한 사항
- 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즉시종결: 단순 전자처리기기 파손·고장 등 자료유출의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사고인 경우로서 통보 내용만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및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2. 서면조사: 자료유출의 피해가 경미하나 통보내용만으로 보호기관의 장이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
 3. 현장조사: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며 제2호에 따른 서면조사만으로 보호기관의 장이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

- ③ 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장비의 교체,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기관 장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중 “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제8호 중 “규칙 제35조제2항”을 “규칙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보호사고”를 “자료유출사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2의 신설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특례는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된 2025년 8월 7일 전에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하여 최대 15년의 범위에서 자료보호 요청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기준 남은 보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자료보호연장요청을 수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영업비밀 해당 여부 판단 자료 작성방법 (제9조관련)

1. 비공지성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① 관련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② 고용인 및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나. 자료보호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2. 비밀관리성
가. 자료보호 신청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나. 자료보호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①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②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
3. 경제성·유용성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①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가치의 내용 ②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와 내용 나. 자료보호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다. 자료보호 신청 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 ① 해당 추가정보의 일반 대중 이용 가능성 여부 ② 자료보호 신청 정보와 관련 추가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 라. 자료보호 신청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 시설, 특정 기술, 기본 사업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별지 제1호서식]

보호자료관리대장

[illegible]